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2 ~ 4
----------	----------

제출연월일 : 2002. 1.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개정사유

- 세제지원(감면) 범위를 “지정문화재”에서 그 범위를 “개인소유 등록 문화재”에 대해서도 재산세등을 감면하여 관리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유지·보수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며,
- 전, 월세금의 급격한 상승(인상)으로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상승 억제로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리·보완키위함.

주요골자

- 거창군세 감면조례의 제정·시행 목적의 내용을 보완[안 제1조]
-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 있어 현재 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사적, 보호물 등]에 대해서만 감면하던 것을 개인소유의 건조물,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중 문화재청에 등록된 문화재도 감면키 위해 그 범위를 확대[안 제9조]
-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현행 전용면적 60㎡이하에서 85㎡이하[국민주택 규모]로 확대[안 제11조]
- 기타 관련법의 개정등 사유로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 보완[안 제4조, 제12조, 제25조, 제32조]

개정근거

-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지방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근거 법 조항]
- 경남세정 13400-11107(2001. 8. 4)호 및 세정13400-11715(2001. 12. 12)호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거창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의하여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군세의”를 “따라 군세의”로 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4조 조제목 “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하고, “음성나환자 집단촌에 거주하는 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안”을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안”으로 한다.

제9조 조제목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1조제2호 및 제3호중 “60”을 “85”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선정받은자(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육성사업지원 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를 포함한다)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를 “육성사업자로 선정된자와 농산물 가공 산업육성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영위하는”을 “영위한자가 그”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지방세법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제32조중 “지방세법”을 “법”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u>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u>따라</u> <u>군세의</u> ----- <u>법령기능을</u> <u>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u> <u>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u> <u>적으로 한다.</u></p>
<p>제4조(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u>감면</u>) 음성나환자 집단촌에 거주하는 <u>나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집단촌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u></p>	<p>제4조(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u>감면</u>) <u>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안</u>----- ----- ----- ----- ----- ----- ----- .</p>
<p>제9조(지정문화재에 대한 <u>감면</u>) (본문 생략) 1.~3. (생략)</p>	<p>제9조(문화재에 대한 <u>감면</u>) ①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신 설 ></p> <p>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본문생략)</p> <p>1. (생 략)</p> <p>2. 전용면적 <u>60</u>제곱미터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공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 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1998. 8. 18)</p> <p>3. 전용면적 <u>60</u>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법 제234조의 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개정1998. 8. 18)(개정2001. 1. 13)</p>	<p>② <u>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p>제11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u>85</u>----- ----- ----- ----- ----- ----- ----- .</p> <p>3. ----- <u>85</u>----- ----- ----- ----- ----- ----- ----- .</p>

